

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858-1
----------	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3. 20.

발 의 자 : 오승철 의원

1. 수정이유

- 법제처의 <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>에 따라 조례안 내용 중 약칭 사용을 목적규정 다음 맨 처음 용어가 나오는 조항에서 하도록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위탁을 받은 자”에 대한 약칭을 규정 (안 제5조제4항)
- 약칭된 용어로 수정 (안 제5조의2제1항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4항 전단 중 “자의”를 “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 중 “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를 “수탁자”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	수	정	안
제5조 (운영관리) ① ~	③ (생략)	제5조 (운영관리) ① ~	③ (생략)	제5조 (운영관리) ① ~	③ (개정안과 같음)		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		④ -----		④ -----			
시장에 그 기간을		-----		-----			
두 번 이상 갱신할 필		-----		-----			
요가 있다고 인정할		-----		-----			
경우에는 갱신할 때		-----		-----			
마다 「공유재산 및		-----		-----			
물품 관리법 시행		-----		-----			
령」 제19조에 따라		-----		-----			
위탁을 받은 자(이하		-----	자의	-----	자(이하		
“수탁자”라 한다)의		-----		-----	“수탁자”라 한다)의		
관리운영능력 등을		-----		-----			
평가한 후 그 기간을		-----		-----			
갱신할 수 있다. 이		-----		-----			
경우 갱신기간은 갱		-----		-----			
신할 때마다 5년을		-----		-----			
초과할 수 없다.		-----		-----			
제5조의2 (수탁자의 의		제5조의2 (수탁자의 의		제5조의2 (수탁자의 의			
무) ① 제5조제1항에		무) ① 제5조제1항에		무) ① -----			
따라 노인복지관의		따라 노인복지관의		-----			
운영관리를 위탁받은		<u>운영관리를 위탁받은</u>		<u>수탁자</u> -----			
자(이하 “수탁자”라		자(이하 “수탁자”라		-----			
한다)는 제4조에 따		<u>한다)는</u> 제4조에 따		-----			
른 업무를 성실히 수		른 업무를 성실히 수		-----			

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행하여야 한다.

② ~ ⑤ (생략)

-----.

② ~ ⑤ (개정안과
같음)